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2
----------	-----

제출연월일 : 2007 . 8. 24.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1994년부터 공단보육시설로 위탁운영하여 오던 대전광역시문평어린이집을 조례에 추가하여 시립보육시설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대전광역시문평어린이집을 추가함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7. 7. 20. ~ 8. 9.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한다.

제3조중 “법”을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3란 다음에 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명 칭	위 치	비 고
4	대전광역시문평어린이집	대덕구 문평동 79-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입소대상)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3세 미만의 영아를 원칙으로 하며, 입소 우선순위는 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입소신청 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3세 이상의 유아도 입소할 수 있다.</p> <p>[별표]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20%;">명 칭</th> <th style="width: 20%;">위 치</th> <th style="width: 55%;"></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생략)</td> <td rowspan="3"></td> <td rowspan="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설〉</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명 칭	위 치		1	(생략)			2	3		〈신설〉			<p>제1조(목적) ----- 「영유아보육법」----- ----- ----- -----</p> <p>제3조(입소대상) ----- ----- -----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 -----</p> <p>[별표]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20%;">명 칭</th> <th style="width: 20%;">위 치</th> <th style="width: 55%;"></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현행과 같음)</td> <td rowspan="3"></td> <td rowspan="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전광역시 문평어린이집</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덕구 문평동 79-2</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명 칭	위 치		1	(현행과 같음)			2	3	4	대전광역시 문평어린이집	대덕구 문평동 79-2	
구분	명 칭	위 치																											
1	(생략)																												
2																													
3																													
	〈신설〉																												
구분	명 칭	위 치																											
1	(현행과 같음)																												
2																													
3																													
4	대전광역시 문평어린이집	대덕구 문평동 79-2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제 정 1991. 1.14 법률 제4328호
전문개정 2004. 1.29 법률 제7153호
개 정 2004.12.31 법률 제7302호
개 정 2005. 3.24 법률 제7413호
개 정 2005.12.29 법률 제7785호

제 2 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방법에 의한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

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3.24, 2005.12.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05.12.29>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신설 2005.12.29>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2005.12.29>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신설 2005.12.29>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2005.12.29>
- ②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장 비 용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4.13 대통령령 제19446호]

제24조 (비용의 보조)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05.6.23>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5.6.2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1.10 여성가족부령 제11호]

제24조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5.12.12, 2006.5.12>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⑤제4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5.12>

⑥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6.5.12>

⑦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1. 변경사유서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제25조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위탁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6.11.10>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